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자동차가격조사·산정 선택)

30-02-023623 호 ※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은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 기본정보 (가격산정 기준가격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스타리아 HYBRID (STARIA) (세부모델:)

2025

2024-07-24

KMHYA81/ABSU004519

④ 검사유료기간 ④ 변속기 ④ 자동 ② 자동차등록번호 196하8489

⑤ 최초등록일 2024년 07월 24일 ~ 2026년 07월 23일

⑦ 차대번호 종류 ② 무단변속기 ② 기타()

⑧ 사용연료 ② 가솔린 ② 디젤 ② LPG ⑤ 하이브리드 ② 전기 ② 수소전기 ② 기타

⑨ 운동기형식 G4FT ⑩ 보증유형 ⑤ 저가보증 ② 보험사보증[] 가격산정 기준가격

⑪ 사용이력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⑤ 양호 ② 부식 ② 화손(오순) ② 상이 ② 변조(변티) ② 도말

⑫ 차대번호 표기 ⑤ 많음 ② 보통 ② 적음

⑬ 배출가스 ② 일산화탄소 ② 탄화수소 ② 메연 0.00%, 0ppm, 0%

⑭ 차체번호 표기 ⑤ 없음 ② 있음 ② 침수 ②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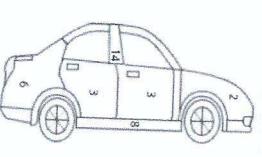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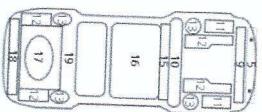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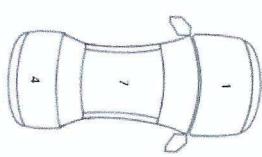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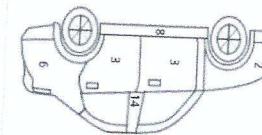
⑮ 특별이력 ⑤ 없음 ② 있음 ② 렌트 ② 영업용

⑯ 용도변경 ② 무채색 ② 유채색 ② 없음 ② 전체 ② 색변경

⑰ 색상 주요옵션 ② 없음 ② 있음 ② 썬루프 ② 내비게이션

⑱ 리콜대상 ⑤ 해당없음 ②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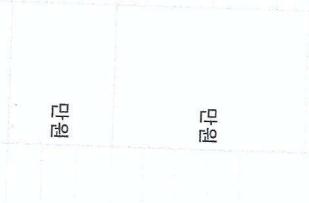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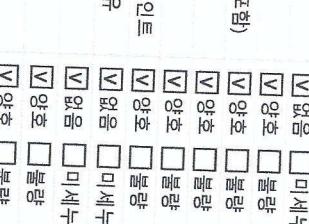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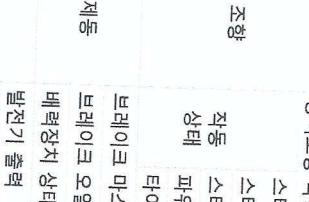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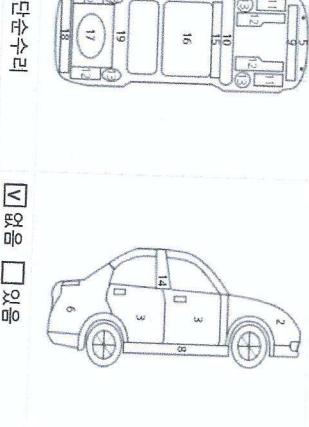
⑲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②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상태표시 부호: X(교환), W(幡면 또는 응접), C(부식), A(흡집), U(요철), T(손상)
※ 하단 항목은 승용차 기준이며, 기타 자동차는 승용차에 준하여 표시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

⑫ 사고이력(유의사항 4 참조) ⑤ 없음 ②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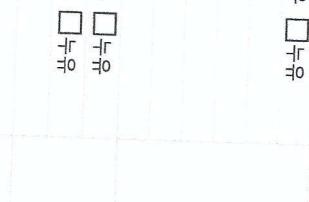
⑬ 교환, 판금 등 이상 부위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

⑫ 사고이력(유의사항 4 참조) ⑤ 없음 ② 있음

⑬ 교환, 판금 등 이상 부위



자동차 세부상태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

기격조사·산정	항 목
수리필요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휠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타이어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유리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기본품목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사용설명서 <input type="checkbox"/> 안전점검대 <input type="checkbox"/> 채 <input type="checkbox"/> 스페니)
보유상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사용설명서 <input type="checkbox"/> 안전점검대 <input type="checkbox"/> 채 <input type="checkbox"/> 스페니)

최종 가격조사·산정 금액

이 가격조사·산정기준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바탕으로 한 기준가격과

(기술사회,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기준서를 적용하였음

민원

성능·상태 점검자 비금속 또는 탈부착 가능 부품은 점검사항에서 제외되며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색, 부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미숙정

⑤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가격·조사·산정자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들

1. ○ 자동차매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부분·한정)에 기재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여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범위에 따른 서비스를 청구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범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매수인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기입한 책임보험 등

(보증기간은 30일, 보증거리는 2,000킬로미터로 합니다).

○ 자동차매입자는 자동차·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때 현행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기간 및 보증범위에 따른 서비스를 청구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

교통부 고시)에 따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리플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리플센터(www.car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365(www.cars365.go.kr)에서 차량을 조회 및 정보이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365 > 자동차 실물검색 > 차량번호 입력

2.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나 점검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

3.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상태점검자에 대한 규정」 제80조제9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사업정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4. ○ 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퀵티페널, 루프페널, 사이드실페널 부위는 절단, 용접 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5.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6.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해당 기록부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7. 제크홀무(판단기준)에

○ 미세누유(미세누수): 해당부위에 오일방지수이 및 차체는 청도로서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

○ 누수(누수): 해당부위에서 오일(방지수이 및 차체는 청도로서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

○ 부속: 차량하부와 외관의 금속표면에 의해 금속이 아닌 상태로 상실되어 기는 현상(순히 녹슬어 있는 상태는 제외합니다)

○ 현수: 차동차의 원동기, 연료기통 주유장치 일부에 침입한 현수(순히 녹슬어 있는 상태는 제외합니다)

○ 차체 주행거리: 차동차성능·상태점검 당시 해당 주행거리에 주행거리의 주행거리가 차동차전산정보조작(차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주행거리(주행거리에 교체 정보 포함)보다 적은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이를 적어야 합니다.

※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의 보증에 관한 사항들

8. 가격조사·산정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부분·한정)에

작년 내용에 하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일, 보증거리는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종 면적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9. 자동차매입자는 매수인에게 가격조사·산정을 운송할 경우 가격조사·산정자가 해당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결과를 이 서식에 적도록 한 후, 반드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매입자는 가격조사·산정에게 가격조사·산정비용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10. 자동차가격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가격으로 조사·산정하고, 기준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제 서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가격과 기준서는 산정일 기준 최근에 발행된 것을 적용합니다.

11. 특기사항란은 가격조사·산정자의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견해가 성능·상태점검자의 견해와 다를 경우 표시합니다.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이란

※ 「가격조사·산정」은 소비자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고차 가격의 적절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문가(가격조사·산정인)이 객관적으로 제시한 가액입니다. 따라서 「가격조사·산정」은 소비자와 구매여부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점검 장면 촬영 사진



점검 장면 촬영 사진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2024년 12월 27일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23조의5에 따라
(중고자동차성능·상태를 점검, 자동차·가격조사·산정)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다이어트카드(자동차·가격조사·산정 선택)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장남선씨 박철승 (인)

4444